

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기관구역의 추가의 소화장치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규칙 8편 방화 및 소화	2020년 1월 1일(건조일 기준) 시행사항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Res.MSC.409(97)) 개정사항 반영

○ 개정 사항

고정식 물소화장치로 보호되는 보일러가 설치된 기관구역에는 승인된 135L 포말소화기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음

○ 영향 분석

- 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: 해당 사항 없음.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: 해당 사항 없음.